

연구윤리규정

1. 목적

다문화융합연구소가 발간하는 다문화와 교육(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연구윤리 규정은 투고자 및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자적 양심에 따라 준수해야할 도덕적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술지의 품격을 높이며 연구윤리의 제고를 통한 학술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연구부정 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또는 표절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표절 금지
- 2)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 3) 데이터의 위조, 변조, 조작 금지
- 4) 연구대상자의 권익 침해 금지
- 5) 정당성이 없는 연구 자료의 확보 금지
- 6)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연구자 허위 기재 금지
- 7) 기타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장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5.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3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모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과 문화 및 교육 관련 타 학회 회장의 추천받은 2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의 자격) 연구윤리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문화 및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문화 및 교육 관련 학술지에 5편 이상 (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 2) 최근 2년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3회 이상인자.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은 하지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 3)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징계) 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1) 시정 권고
- 2) 경고
- 3) 징계결정 내용에 대한 연구자에 대한 공표
- 4) 해당 연구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의 서면 통보
- 5) 연구소 홈페이지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 6)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대한 5년 이하의 투고 또는 게재 금지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search Ethics Regulations

1. Purpose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henceforth referred to as “journal”), which is published by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i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academic research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search ethics while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journal by clarifying the moral obligation that must be abided by contributors and researchers in accordance with their academic conscience.

2. Research Ethics Regulations that must be abided by the Researchers

Article 1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misconduct refers to the act of stealing or plagiarizing the ideas, research content, and results of other people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or quotation, the act of forging nonexisting data or research results, and other miscellaneous misconduct that severely goes beyond the range conventionally tolerated by the academia.

Article 2 (Obligations of the Researcher) Researchers must faithfully fulfill the following obligations.

- 1) No plagiarism
- 2) No overlapping or double publication
- 3) No forging, falsifying, or manipulating of the data
- 4) No infringing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search subject
- 5) No securing illegitimate research data
- 6) No false listing of researchers including the inclusion of authors that did not directly contribute to the research or the intentional exclusion of authors that directly contributed to the research
- 7) No miscellaneous misconduct that goes against one’s academic conscience

3. Research Ethics Regulations that must be abided by Editors

Article 3 Editors ar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publish submitted papers, and must respect the independence of the researcher.

Article 4 Editors must handle submitted papers for journal publication by following the level of the paper and the submission regulations regardless of personal acquaintances and prejudices not to mention the gender, age, and affiliation of the author.

Article 5 Editors must request an assessment for submitted papers from reviewers that have the expert knowledge in the relevant field and a fair sense of judgement. Editors endeavor to allow an object assessment by avoiding reviewers that are acquainted with or hostile to the author. However, if assessments on the same paper differs considerably between reviewers, advice can be obtained from a third expert in the relevant field.

Article 6 Editors must not make public the contents of the paper of matters regarding the author until publication for the submitted paper is determined.

Article 7 Editors must quickly notif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make adequate responses when issues like complaints raised against the reviewer's paper assessment occur.

4. Research Ethics Regulations that must be abided by reviewers

Article 8 Journal reviewers must faithfully assess requested papers within the time frame set by the review regulations and must notify the results to the editors. If the reviewer determines that he or she is not the right person assessing the paper, the reviewer must notify this to the editors.

Article 9 Reviewers must fairly assess paper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regardless of personal academic beliefs or private acquaintances with the author. Reviewers must not disqualify papers without stating sufficient grounds or because the paper conflicts with the reviewer's own viewpoint or interpretation, and the reviewer must not make an assessment without properly reading the paper.

Article 10 Reviewers must notify the editors when the paper requested for review has already been published in another journal or is being examined in overlap, or any other problems have been discovered.

Article 11 Reviewers must respect the independence of the author as an expert intellectual. Reviewers must reveal their judgement regarding the paper on an assessment statement and explain the reason behind areas that they believe need supplementation. Sentences must use courteous and gentle expressions and no expressions that belittle or insult the author.

Article 12 Reviewers must keep confidentiality on the paper. Reviewers must not show the paper to another person and should not discuss it with another person unless special advice sought after for the assessment of the paper. Also, the contents of the paper must not be quoted before the journal in which the paper is included in is published.

5. Research Ethics Regulations Enforcement Guidelines

Article 13 (Research Ethics Regulations Pledge) All researchers must pledge to abide by the current research ethics regulations. However, previous researchers at the time of this ethics regulation coming into effect are regarded as having pledged to the current ethics regulation.

Article 14 (Reporting Research Ethics Regulation Violations) Researchers who know of another researcher violating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 must endeavor to correct this by reminding the violating researcher of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However, if the problem is not corrected and a clear research ethics violation is revealed, it may be reported to the institute's research ethics committee.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ust not make public the identity of the researcher who reported the problem.

6. Regulations on Research Ethics Committee Operation

Article 15 (Research Ethics Committee Organization) The institute must establish a research ethics committee(henceforth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within

the institute in the following way in order to assess various matters related to research ethics.

- 1) The committee consists of five persons including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two members recommended by a president from another academic society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 2) The chairperson, deputy chairperson and secretary are elected by mutual vote in the committee.
- 3)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the term for members is one year, which may be served consecutively.

Article 16 (Research Ethics Committee Member Qualifications) Committee members must fall under the following items as researchers in institute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or full-time instructors or above at the college level.

- 1) Persons who have published five or more papers (two papers for overseas journals including at the SCI and SSCI level) i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past five years.
- 2) Persons with three or more experiences of acting as a research paper presenter (or moderator, contributor) at authoritative academic conferences both domestic and overseas in the past two years.

Article 17 (Research Ethic Committee Operation)

- 1) The committee is convened by request of the institute director or when recognized as necessary by the committee chairperson.
- 2) The committee is valid under majority attendance of registered members and decides issues by majority vote of attending members. However, for power of attorney, the committee recognizes attendance but not the voting right.
- 3) Members involved in research that is subject to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may not participate in said deliberation.
- 4) The chairperson may demand submission or report of data from the researcher in charge or the manager in charge if it is necessary for the deliberation.

- 5) Members must keep confidentiality regarding all matters related to the deliberation.

Article 18 (Functions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The committee deliberates the following items.

- 1) Matters regarding the research ethics of the paper published in the journal
- 2) Accusations against the research integrity related to the institute
- 3) Inquiries regarding research misconduct related to the institute
- 4) Miscellaneous matters on research ethics brought up by the chairperson

Article 19 (Disciplinary Action) The committee may vote for the following disciplinary actions for members who have violated the regulations.

- 1) Corrective recommendation
- 2) Warning
- 3) Official declaration of the researcher regarding disciplinary action
- 4) Written notice of the final findings by the committee to the agency head to which the researcher is affiliated
- 5) Deletion of the relevant paper from the institute's homepage search site
- 6) Contribution or publication banned from the institute's journal for five years or less

Article 19 (Miscellaneous) Items not determined by the present regulations ar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committee.

Additional Rules

1. This regulation is enforced starting June 1, 2016.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지(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포함)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는 8인의 위원과 문화 및 교육 관련 전공분야 4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문화 및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문화 및 교육 관련 학술지에 5편 이상(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 2) 최근 2년 이내에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3회 이상인 자.

제5조(편집 원칙)

- 1)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완료 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 3)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학술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4)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6)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편집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편집내규에 따라 심사 및 논문편집이 완료되면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7조(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제출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9조(발간횟수) 6월 30일, 12월 30일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diting Committee Regulat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rules is to define matters regarding the editorial direction and standards of the academic journal(including the research paper collection for the academic conference) of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henceforth referred to as the “institute”)

Article 2 (Editing Committee) An editing committee(henceforth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s establish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evious article.

Article 3 (Committee Configuration)

- 1) Editors consist of 12 persons or less including 8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4 members in the field of study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 2) The chief editor is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editors.
- 3) Member terms are 2 years and may be served consecutively.
- 4) The committee determines issues on the basis of majority attendance by registered members and the majority votes of attending members.

Article 4 (Editor Qualifications) Editors must fall under the following items as researchers in institute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or full-time instructors or above at the college level.

- 1) Persons who have published five or more papers (two papers for overseas journals including at the SCI and SSCI level) i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past five years.
- 2) Persons with three or more experiences of acting as a research paper presenter(or moderator, contributor) at authoritative academic conferences both domestic and overseas in the past two years.

Article 5 (Editing Principles)

- 1) The chief editor receives papers that have finished review and convenes the editing committee for deliberation
- 2) Editors categorizes papers that have finished review according to their area and determine the number of papers to be published and the editing

- guidelines.
- 3) The editors check whether the paper has been written in compliance to the “Journal Paper Submission and Preparation Outline” of the present institute and review the details in terms of editing.
 - 4) If a paper scheduled for publication for an issue is unable to complete supplementation procedures within a time frame, it is automatically delayed until the procedure is completed.
 - 5) If the paper has been released or examined in another journal, it cannot be published in the present journal.
 - 6) If the same author submits two or more papers simultaneously, only the one that is examined as the paper for publication will be published.

Article 6 (Editing Notification) When procedures a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editing guidelines and the review and editing are completed, the chief editor must notify the president in writing and take steps including printing and proofreading.

Article 7 (Publication Order) The publication order of research papers follows the publication confirmation order of the editing committee but the chief editor may adjust the order in consideration of the editing configuration.

Article 8 (Certificate for Scheduled Publication) A certificate for scheduled publication is issued only per request of the submitter after publication of the submitted paper is confirmed.

Article 9 (Number of Publications) The journal is published twice yearly, as a rule, on June 13 and December 30, but a special issue may be published if necessary.

Article 10 (Miscellaneous) Matters not determined by the present regulations are determined separately by the editing committee.

Additional Rule

1. These rules are enforced starting June 1, 2016.

논문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지(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둔다.

- 1) 심사위원의 자격 : 심사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문화 및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최근 5년간 문화 및 교육 관련 학술지에 5편 이상 (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 ② 최근 2년 이내에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 (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3회 이상인 자.
-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익명성 보장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제3조(심사분야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분야를 결정하며 심사분야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원칙) 논문의 심사원칙은 다음에 의한다.

- 1)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의뢰하고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
- 2) 심사항목은 연구내용의 창의성과 응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전개와 체계, 연구 및 분석 방법, 표현력 및 선행연구의 활용,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 문헌활용도 및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3) 심사위원은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4) 논문의 게재결정은 심사결과 모두 “게재가”인 경우와 “게재가”, “수정후 게재”인 경우로 한하며, 모두 “수정후 게재”인 경우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심사결과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엇갈릴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인 경우 게재할 수 있고, 심사결과 모두 “수정후 재심”이거나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인 경우와 모두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 5) 1차 심사가 완료되면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정 후 다시 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2차 심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6)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제5조(심사이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의 심사위원 심사판정의 처리에 대해서는 심사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절차) 심사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 1) 논문의 접수(편집위원회)
- 2) 심사분야의 결정(편집위원회)
- 3) 심사위원의 선정(편집위원회)
- 4) 논문심사(심사위원)
- 5) 심사결과 회수 및 게재 여부 결정(편집위원회)
- 6) 심사결과, 게재예정(또는 불가) 통보 및 수정·보완사항 제시(편집위원회)
- 7) 수정·보완된 최종 원고접수(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 지적에 대한 수용여부 확인 및 게재동의(편집위원회)
- 9) 게재확정, 게재호수 결정 및 통보(편집위원회)

제7조(심사료와 재신청)

- 1)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 지급
 -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2) 게재불가 논문의 재신청
 - 게재를 신청하였으나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per Review Regulat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rules are to define matters regarding the review of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henceforth referred to as the “institute”) journal(including the research paper collection for the academic conference).

Article 2 (Reviewers) Reviewers are established for the review of research papers.

1) Reviewer Qualifications: Reviewers must fall under the following items as researchers in institute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or full-time instructors or above at the college level.

① Persons who have published five or more papers (two papers for overseas journals including at the SCI and SSCI level) i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past five years.

② Persons with three or more experiences of acting as a research paper presenter(or moderator, contributor) at authoritative academic conferences both domestic and overseas in the past two years.

2) Reviewer Selection and Guaranteeing Anonymity

① The editor selects two reviewers after consultation with editors for the review of submitted papers.

② The editing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thoroughly guaranteeing the anonymity of reviewers.

Article 3 (Determining the Field of review) The chief editor determines the field of review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standards. If the field of review is determined to be overlapping, it will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with the editors in the relevant field.

Article 4 (Review Principles) The review principles are as follows.

1) Reviews are requested anonymously, and papers undergo an Review by three reviewers, whose names are undisclosed.

2) The review assesses the degree of corresponding to requirements including

creativity, applicability, research method validity, logical development and system, research and analysis method, use of expression and preceding studies, academic value and contribution level of the research results, utilization of literature and other editing techniques.

- 3) Reviewers must submit the review results to the chief reviewer within 14 days.
- 4) The decision to publish a paper is when both are “published”; “published”, “published after revision”; and when both are “published after revision”, the paper can be revised and published according to the review result.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ublished” and “not published”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editor-in-chief selects a third reviewer in consultation with the editorial committee and then requests the review. The paper may be published if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is “published” or “published after revision”. However, paper cannot be published if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ll “review after revision”; “review after revision”, “not published”; and both are “not published”.
- 5) If the primary review is completed, the results must be notified to the contributor, and a revision may be demanded depending on the results, and consequently, a paper resubmitted after revision undergoes a secondary review by the reviewers, the results of which will determine publication.
- 6) A paper invited as a special contribution must undergo the same review procedures as above and must be revised for publication if necessary.

Article 5 (Objection to review Result) The paper contributor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review result. In this case, the editor-in-chief may select a third reviewer after reviewing the controversial content and request the review. No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third reviewer is accepted.

Article 6 (Review Procedures) The review procedures are carried out as follows.

- 1) Reception of the paper(Editorial Committee)
- 2) Determination of the field of the review (Editorial Committee)
- 3) Determination of reviewers(Editorial Committee)
- 4) Paper review(Reviewers)

- 5) Retrieval of review results and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o publish(Editing Committee)
- 6) Notification of review results and publication status, and presentation of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matters(Editing Committee)
- 7) Reception of the final revised and supplemented manuscript(Editing Committee)
- 8) Confirmation of whether th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tems were acknowledged and agreement to publish(Editing Committee)
- 9) Publication confirmation, determination and notification of publication issue(Editing Committee)

Article 7 (Review Fee and Reapplication)

- 1) Payment of application fee to reviewers
 - A fixed review fee is paid to the reviewers according to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editing committee.
- 2) Reapplication of papers that were disapproved for publication
 - Papers that were disapproved for publication may be reapplied for publication after a fundamental revision to their content.

Article 8 (Miscellaneous) Matters not determined by the present regulations are determined separately by the editing committee.

Additional Rule

1. These rules are enforced starting June 1, 2016.
2. These rules are enforced starting June 1, 2020.

논문작성양식

1. 용지 설정 및 여백

용지종류	용지여백		용지방향
사용자 정의 폭: 188mm 길이: 257mm	위쪽	17mm	좁게
	아래쪽	23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3mm	
	꼬리말	0	
	제본	0	

2. 편집 기준

구 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비 고	
	정 령	줄간격	들여쓰기	크 기	서 체	모 양		
본문 (바탕글)	혼합	170	10pt	10	신명조	장평100		
글제목	가운데	150	0	16	신명조	진하게		
성명/소속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진하게		
장제목	I.	혼합	160	10pt	14	신명조	진하게	위2행/아래1행 띄움
절제목	1.	혼합	160	10pt	12	신명조	진하게	위/아래 각1행 띄움
항제목	1)	혼합	160	10pt	11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목제목	(1)	혼합	160	10pt	10	신명조	보통	위 1행 띄움
〈 표〉 [그림]	내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위 띄움
	제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아래 띄움
각주	혼합	130	내어쓰기10	8.5	신명조	보통		
참고문헌	혼합	160	내어쓰기22	9	신명조	보통		
국문초록	혼합	160		9	신명조	보통		
영문초록	제목	160		13	신명조	진하게		
	부제	160		10	신명조	보통		
	저자명	160		8	신명조	보통		
	본문	160		9	신명조	보통		

- 1) 논문제목(신명조 19, 장평 100, 자간 0, 진하계)에서 두 줄을 띄우고, 필자명과 소속(신명조, 10pt)을 오른쪽 정렬로 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제1저자(책임연구자)를 저자명 중에서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와 구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같을 경우: 홍길동·김주동(한국대학교)
- 2) 본문: 신명조 10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70%, 들여쓰기 10pt, 왼쪽·오른쪽 여백 0
- 3) 제목의 번호부여
 - 1단계 : I, II, III등의 로마자 표기
 - 2단계 : 1, 2, 3등의 아라비아 숫자 표기
 - 3단계 : 1), 2), 3)등의 반괄호 숫자로 표기
 - 4단계 : (1), (2), (3)등의 적각 괄호문자로 표기
 - 5단계 : ①, ②, ③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
 - 6단계 : -전각 기호로 표기
 - 7단계 : • 불릿 기호로 표기
- 4) 인용문: 신명조 9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 왼쪽 여백 15, 오른쪽 여백 20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씩 띄움. 번호가 다른 예문이 이어 나올 때에는 사이를 띄우지 않는다.
- 5) 각주: 신명조 8.5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30%,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0
 - (1)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쓴다.
 - (2) 문헌 배열 순서: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순으로 하되 각 언어의 자모 순으로 배열한다.
 - (3) 논문 내용 속에 참고 문헌을 표시할 경우 괄호 속에 넣어야 한다.
예) (홍길동, √1991:23√참조)
※ √표는 띄움 표시입니다.
- 6) 참고문헌
참고문헌 중 모든 서명과 학술지명 호/권(호) 등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영문저자의 경우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한다.

- (1) 단행본 : 저자명(년도). 서명, 출판사
 - 저자가 3인 이내의 경우는 전부 기록하되, 저자명 사이에는 중간점(·)을 넣는다.
 -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저자명 외'로 표기한다.
 - 외국 출판사는 출판지: 출판사로 표기한다. 예) 東京: 源流社
 예) 서종남(2010).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2) 역서: 역자명(역/역주). 서명, 저자명(번역년도), 출판사.
 예) 김영순 외(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Duane E. Campbell(2012), 교육과학사.
- (3) 학위논문: 저자명(년도). 논문제목, 발행처.
 예) 박미숙(2016).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실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학술지 논문: 저자명(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면수.
 예) 홍길동(2015). 몽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진로경험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8(1)*, 101-120.
- (5)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집: 저자명(년도). 논문제목, 발행처.
 예) 홍길동(201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한국 전통 명절: 설날을 중심으로, 2016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 (6) 인터넷 자료: 저자명(년도). 기사제목, *발행처 일자*, 사이트 주소(사이트 주소가 길면 줄 바꾸어 기재).
 예) 오제일(2016).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중국인이 절반 '압도적', *뉴스시스 7월 24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7_0014249033&cID=10201&pID=10200
- (7) 신문기사: 저자명(년도). 기사제목, *신문명 일자*.
 예) 윤민용(2009). 미라...잠들어 있는 그대에게 묻는다, *위클리 경향* 6월 25일.
- (8) 잡지기사: 저자명(년도). 기사제목, *잡지명 월/호/권*, 면수.
 예) 최영호(2013). 불패의 리더, *월간 문화재* 9월, 10-11.

- (9) CD, DVD, 영상자료: 영상의 경우 시간(시간:분:초)까지 표기
예) 박찬욱(2006). 믿거나 말거나 찬다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00:26:25.

3. 논문초록

- 본 학술지는 한·영 혼용 학술지로, 국문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작성하고, 영어 논문의 경우 영문 초록만 작성하도록 한다.

1) 요약

신명조 10pt, 장평 92%, 자간 -8

줄간격 160%, 왼쪽오른쪽 여백 15

2) 영문초록(영어 논문일 경우)

논문의 첫 페이지

제목

저자

내용

키워드(3-5개 이내)

각주

*제1저자, 소속, 이메일

**교신저자, 소속, 이메일

3) 국문초록(국문 논문의 경우)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

제목

저자 홍길동*김주동**

아래 1줄 띄우고, 200단어(15줄) 이내로 작성

주제어(3-5개 이내)

4. 본문에서 전문술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과 원어를 병기

원어는 괄호로 묶고, 한 번 쓴 원어는 반복할 필요는 없다.

예) 음운론(phonology)

5. 분량

참고문헌을 합하여 20쪽 내외를 원칙으로 함.

6. 투고자 인적사항

참고문헌에서 두 줄 띄우기, 중고딕 8.5pt, 줄간격 130

이름,

소속,

소속주소,

전자우편 순으로 기입함.

원고 모집

“ 『다문화와 교육』은 년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논문을 공모합니다. ”

1. 원고모집 - 수시

2. 발간일정

- 1) 『다문화와 교육』 제6권 1호: 2021년 6월 30일
- 2) 『다문화와 교육』 제6권 2호: 2021년 12월 30일

3. 투고 관련 사항

1) 투고자격

-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

2) 접수처

- 온라인 투고 접수 : <http://submission.cims.kr>

3) 문의처: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연구실: 032-860-8741
- FAX: 032-860-9147

A Call for Research Manuscripts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is published twice a year.

We are openly collecting dissertations in the following way.”

1. Research Manuscript Collection – At all times

2. Publication Schedule

- 1)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Book 6, Issue 1: June 30, 2021
- 2)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Book 6, Issue 2: December 30, 2021

3. Matters regarding contribution

1) Contribution Qualifications

- Researchers with a master's degree or above in the relevant field.

2) Reception

- Home page : <http://submission.cims.kr>

3) Inquiries: Inha University,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 Research Office: 032-860-8741
- FAX: 032-860-9147

연구윤리 준수 협약서 확인

- 성명 :
- 소속 :
- 논문제목 :

본인은 위의 논문을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에 투고하면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 (인)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편집위원회 귀중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Vol.5, No.2)

The date of issue	The date of issue December 31, 2020
A publishing office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Inha University
Publisher	Youngsoon Kim, Head of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CIMS) in Inha University
Editors	Seungeun Choi, Youngsub Oh
Address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22212
Phone	+82-32-860-8741
Fax	+82-32-860-9147
Editing·Print	Earticle (+82-0505-555-0741)

ISSN 2508-271X

* Any content in this journal is not allowed to publish or copy without permission by the publisher

